

부산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단3498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유 담당변호사 조상흠, 조후정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양호

변 론 종 결 2022. 9. 8.

판 결 선 고 2022.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와 피고 사이에 2019. 12. 10.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18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친족관계

- (1) C은 1967. 2. 25. D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피고(장남), E(차남), F(장녀), G(차녀)을 두었다.
- (2) 피고는 1979. 12. 13. C의 형제 H의 아들로 입양되었다.

나. 1차 상속

C이 2012. 12. 3. 사망하였는데,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포함한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모두 2013. 3. 27. D 앞으로 상속등기되었다.

다.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 (1)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및 E의 연대보증 하에 2012. 5. 23. I(주)에게 10억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회사는 2015. 5. 29. 이후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였다.
- (2) 원고는 그 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대출원리금의 90% 가량을 회수하고, 위 회사 및 E를 상대로 잔여 대출원리금 104,049,612원 및 그 중 원금 94,230,137원에 대한 2015.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8. 11. 이 법원(2015차8427)으로부터 그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5. 12. 11.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3)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은 186,198,328원 및 그 중 87,716,594원에 대한 2021.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 남았다.

라. 2차 상속

- (1) D은 2019. 12. 10. 사망하였는데, 피고, E 등 공동상속인들은 2020. 5. 11.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상속재산을 모두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
- (2) 피고는 2020. 5.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근저당권 설정

피고는 2021. 7. 22. J은행에 이 사건 아파트(2021년 기준 시가 추정액 7억 2,200만원)에 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1,000만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자금을 대출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이미 2013. 3. 27.경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설령 1차 상속 당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소유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더라도, D 사망 당시에는 그 후의 변심 등 사정변경에 따라 다른 분할협의를 성립할 수도 있었던 점, 1차 상속 당시의 합의와 이 사건 분할협의를 별개의 법률행위라고 할 것인 점,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행위는 2020. 5. 11.자로 성립한 이 사건 분할협의로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는 위 분할협의일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본안 판단

가. 청구원인

E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처분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E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으로 위 상속지분에 대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E의

상속지분(1/4) 상당액인 1억 8,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상속재산 협의분할 모두 분할에 이르기까지의 재산적·신분적 기여, 부양 요소, 일방 당사자의 특별한 수익 유무, 분할 후의 관계 등 다양한 고려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점, ② 이러한 고려 요소들은 객관화하거나 수치화·정형화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은 반면, 당사자들에게는 이성적·심정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합당함을 갖춘 것들이므로, 특별히 이례적인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③ 부부 또는 친족이 아닌 제3자로서는 그와 같은 분할 결과에 이르게 된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④ 이에 따라 민법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상속재산 분할협약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인 이상, 이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점, ⑤ 실제로도 부부간에 있어 등기부상 소유관계, 상속에 있어 법정 상속분 등 일정한 법률상 기준과 다른 내용의 분할협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상속재산 분할협약에 있어서도 타당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또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약을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 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2) 뒤에서 보는 반대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하는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3) 오히려, 을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C 사망 이후 피고, E 등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되, 모친(D) 생존시까지의 모친 명의로 등기해 두고, 피고는 나머지 형제들에게 금전을 지급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상속재산은 모두 D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던 사실, 이후 피고는 E(배우자 K)에게 2015. 7. 1.부터 2021. 7. 23.까지 합계 251,129,000원을, G에게 2015. 2. 27.부터 2020. 9. 15.까지 합계 165,000,000원을, F에게 2015. 1. 14.부터 2019. 9. 19.까지 합계 12,700,000원을 각 지급하였던 사실, 피고는 2015. 6. 30. J은행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 9,600만원)을 설정하여 주고 자금을 대출받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상적인 가족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상속재산 분배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가 E의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즉, ① 상속재산은 특정 상속인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상속인의 고유재산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고, 실제로 특정 상속인과 거래하는 거래상대방은 그 상속인 자신의 재산 상태를 염두에 두고 거래하는 것이지 피상속인의 재산까지 고려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②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상속재산을 일부 상속인 소유로 분할하는 사례는 흔하게 접할 수 있고 이는 친족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 감정 등을 모두 감안한 결과로서 합리성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양보한 상속인의 결단은 미덕으로 칭송되어야 할 경우가 더 많은데, 그러한 경우를 모두 사해행위로 보는 것은 채권자 보호의 과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③ 또한 자신의 법정

상속분보다 적은 상속재산을 취득하거나 상속을 받지 않는 것으로 협의한 상속인의 의사표시는 실질에 있어서 상속포기 또는 일부 포기의 의사표시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상속포기를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판례(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를 감안하면, 우연히 분할협의의 형식으로 상속지분을 포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하는 경우 비법률가인 일반인의 법감정에 크게 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④ 또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 피고가 E에게 지급한 돈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E 상속지분의 가치보다 다액인 점, ㉡ 비록 피고가 각 공동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각각 다르나, 각 돈이 지급되기 시작한 시기가 대체로 일치하고, 각 공동상속인과 피고 사이의 친소, 이해관계 또는 상속재산에 대한 양보 의사 유무나 정도가 상이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 피고가 2015. 6. 30. J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거액(위 대출금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당시의 시세에 육박하는 금액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을 대출받은 것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도 그 무렵 이미 피고가 위 아파트의 실소유자임을 인정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정황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통상적인 분할협의의 수준을 넘는다고 보이지 않는다. ⑤ 나아가, 피고가 당시 사해행위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였는지와 관련하여서도, ㉣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E 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포기하였으므로, E의 상속지분 포기는 특별히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의식한 행위가 아닐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 오히려,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의식하였다면 ‘상속포기’의 안전한 방식을 취하였을 것인 점, ㉥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E는 54세로서 독립한 가장으로 왕성한 사회활동을 할 나이였으므로, 비록 피고가 형제이지만 E가 스스로 고백하지 않는 이상 그의 재산상태 등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오히려 E는 수치심에서라도 자신의 치부(무자력)를 숨겼을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는 E의 무자력이나 사해행위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

별지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 북구 L에 있는 M아파트 N동

[도로명주소] 부산 북구 O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부산 북구 L 대 82056.3㎡

대지권 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82056.3의 66.64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P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142.183㎡, 끝.

